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 '2024.1.1.~'2024.12.31. 이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 원**(월 최대 60만 원×12개월=720만 원, 24개월 고용유지 시 480만 원 일시지급)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과 정규직 채용 및 전환을 통한 장기근속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2. 지원절차



3. 기업 참여 자격

구분	내용
규모	참여 신청 이전 1년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를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했을 때, 평균 5인 이상을 고용 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예외(1~4인) 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청년창업기업 ⑤ 미래유망기업 ⑥ 지역주력산업 ⑦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⑧ 특별고용지원업종
매출액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1,800만원 이상인 기업 * 연 매출액 : 2022년, 2023년 중 1개년도(1.1.~12.31.) ** 업력 1년 미만인 기업은 연 매출액 요건 보지 않음
고용조정 이직제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상실사유 코드 : 23-①~⑧ 및 26-③) * 제한 규정은 지원대상 청년뿐 아니라 채용일에 관계 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4. 청년 참여 자격

구분	내용
나이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 한정)
근로조건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② 주 소정근로 30시간 이상 ③ 고용보험 가입 ④ 2024년도 최저임금법 기준 최저임금 100%이상
취업애로 청년 (1개 이상 해당)	①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② 고졸 이하 학력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⑥ 자립지원 필요 청년 ⑦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⑧ 북한이탈청년 ⑨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 ⑩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

5. 신청 및 문의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춘천) 고용지원사업팀
(전화) 033-256-8828(내선2번) / 070-4314-4613 E-mail : h2568828@daum.net